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73호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 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 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 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 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 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업분담금 비중은 50%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협약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 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할 예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 (컨설팅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 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의 80% 까지 허용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5. 13(금) 09:00 ~ 2022. 6. 9(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전자파일 e-mail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부	"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및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 ※ e-mail 제출 시 모든 서류 원본을 합본(pdf)으로 제출

□ 접수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1차) 및 사업제안서 발표(2차) 심사 거쳐 평균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범위 내 선정)
 -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신청 금액 대비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 대상 사업제안서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의 발표 자료(PPT, PDF 등) 제출 필요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기타 및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및 국제물류정보포털(<http://withlogis.c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동 사업의 개선방안 모색, 성과 확산,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조사, 성과 발표회, 우수사례 발표회 및 모니터링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 바람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을 통해 설명회 영상 게시